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57호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개정하고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배수설비의 적정 시공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오접 여부 검사방법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에서 인용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함(안 제15조제4항)

나. 별지서식 중 설치위치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오접 여부 검사방법을 명시함(안 별지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0. 26(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6235, 팩스 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 의하여 조사한 하 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 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 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 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 제3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폐수배출량을 측정기기로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 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 다. ⑤ (생 략)	제1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 ----- ----- ----- -----「물환 경보전법」----- ----- ----- ----- ----- ----- ----- ----- ----- ⑤ (현행과 같음)

[별지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제8조제1항)										
설치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배제							
	설치위치									
	관 종		PVC관, PE관, 흙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mm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m³/일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검사일자 (. .)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 여부 (누수, 지하수침투 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 여부, 훼손시 적정복구 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하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염 여부 (검사방법 : 연막 □, 염료 □, CCTV □)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 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시험결과보고서 각 1식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물환경보전법 부칙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용 발생이 없음
- 법령개정에 따른 법령 명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이 없음
- 별지 서식에 검사방법 등을 명기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이 없음

4. 작성자

환경녹지국 하수과장 이종선